

-초안-

장관령

불기…기준을 따르는

M 및 N 타입 차량용 충전식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

산업제품 규정

---

불기 2562년 산업제품 표준법 (8호)에 의해 추가 개정된 불기 2511년 산업제품 표준법 제17조제1항과, 불기 2558년 산업제품 표준법 (7호)에 의해 추가 개정된 불기 2511년 산업제품 표준법 제58조제1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산업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장관령을 공포한다.

1. 이 장관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2. 이 장관령은 납축전지 유형이 아닌, 배터리로만 구동되는 M 및 N 타입 전기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 BEV)용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Rechargeable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 REESS) 산업제품에 적용된다.
3. 정의

“M 타입 차량”은 최소 사륜 이상이고 산업제품 표준에 따라 승객 운송에 사용되며, TIS(태국산업표준) 2390-2563호에 따라 동력 차량 및 트레일러에 의해 시동 및 운행하는 자동차의 유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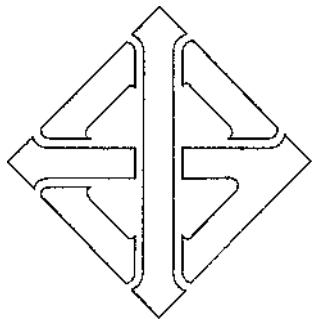
“N 타입 차량”은 최소 사륜 이상이고 산업제품 표준에 따라 화물 운송에 사용되며, TIS(태국산업표준) 2390-2563호에 따라 동력 차량 및 트레일러에 의해 시동 및 운행하는 자동차의 유형을 의미한다.

4. M 및 N 타입 차량용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 산업제품은 불기 2563년 3월 4일 공고한 불기 2511년 M 및 N 타입 차량 산업제품 표준 규정: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 법령의 내용에 따른 산업부 공고 제5704호 (불기 2563년)에 의거한 TIS 3026-2563호의 기준, 특히 제6조 Part 2 REESE의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른 제1조. 범위의 하위 항목 1.2. Part 2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안전성의 내용에 따른다.

불기 2567년에 공고

Miss 펌팟타라 위차이꾼

산업부장관



태국산업표준

THAI INDUSTRIAL STANDARD

TIS 3026-2563

M 및 N 타입 차량: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

VEHICLES OF CATEGORY M AND N WITH REGARD TO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ELECTRIC POWER TRAIN

산업표준원

산업부

ICS 43.120

ISBN 978-616-475-522-2

산업제품 표준  
M 및 N 타입 차량: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

TIS 3026-2563

산업표준원

방콕 프라람 6로 산업부 10400

전화 0 2202 3300

관보 및 일반 업무 공보 내 발표 137호 특별판 126 호

불기 2563년 5월 29일

## 47/4차 학술소위원회

###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47/4 학술소위원회는 자동차의 오염, 소음 및 에너지 관련 47차 학술위원회로부터 임명을 받아, M 및 N타입 차량 산업제품 표준 초안: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을 마련하였다.

#### 소위원회 위원장

Mr. 씀텟 쟁쭈라싹

국가 전자 및 컴퓨터 기술센터

#### 소위원회 위원

니싸이 프양웨롯싸꾼 부교수

석학

Mr. 끼얏나롱 크루바

육상운송청

Mr. 깃띠팟 템짜런

Miss 늦짜리야 아란씨

오염관리청

Miss 만위파 꾸쏜

Mr. 파이랏 라마넷

Mr. 싸랏 빤라꼽찻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청

Mr. 왓차린 분럿

Mr. 씀싹 빤랑텅

태국 생산전기부

Mr. 다나이 추팻

Mr. 완타왓 웡마놋

위라 쑥프악 소위

도시 전기국

Mrs. 싸씨아농 플러이까ԑԑԑ

Mr. 통차이 미누안

지방 전기국

Mr. 끄렷 쑤파콧

왕실 후원 태국기술원

Mr. 콤싼 추카우

태국자동차산업협회

Mr. 피짝 껌쁘라셋

국가 전자 및 컴퓨터 기술센터

Mr. 위라웃 껴웡파닛

자동차학회

Mr. 위라تون 쑥촘분

Miss 앗싸마편 반암

태국자동차부품생산자협회

Miss 완나카낫 닉타웡

우텐 쑤뺏띠 부교수

태국전기자동차협회

Mr. 아디썬 폰타咋

Mr. 아티멧 짜랏쑥싸왓

Mr. 반ფ 땡웡왓타나

태국자동차산업협회

Mr. 낫타웃 뜨라깐쏙

Mr. 랫따나 레하와닛

Miss 월라씨니 럿님

태국산업회 자동차 산업부

Mr. 빤动摇

Mr. 커라넷 껑파쏙

Mrs. 씨리랏 쑤팁빠탐

## 태국산업회 자동차 구성품 및 부품산업부

Mr. 엑까차이 짜총 위싼꾼

Mr. 콤끄릿 니욤랏

## 소위원회 위원 및 서기관

Mr. 풋티퐁 콩짜린

산업표준원

현재 제조사와 소비자는 전기에서 발생하는 청정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자동차 산업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나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전기자동차,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용 부품, 장치들의 생산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 측면에서의 안전성과 태국 내 전기자동차 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M 및 N 타입 차량 산업체품 표준: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산업체품 표준은 UN Regulation No. 100 Revision 2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vehicles of with regard to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electric power train(UN 규정 제100호 2차 개정판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과 관련된 차량의 승인에 관한 통일된 조항) 및 Amendment 1(수정 1)부터 Amendment 4(수정 4)까지를 수정하여 재판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으며, 주요 수정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UN 규정 제100호(UN Regulation No. 100) 제3조. 승인 신청 제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00호(UN Regulation No. 100) 제4조. 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00호(UN Regulation No. 100) 제7조. 형식승인의 수정 및 연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00호(UN Regulation No. 100) 제8조. 생산 적합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00호(UN Regulation No. 100) 제9조. 생산 부적합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00호(UN Regulation No. 100) 제10조. 생산 완전 중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00호(UN Regulation No. 100) 제11조. 승인시험을 수행하는 공인 3자 기관(Technical Service) 및 형식승인 기관의 이름과 주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00호(UN Regulation No. 100) 제12조.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체품 표준 위원회는 이 표준을 검토하고, 불기 2558년 산업체품 표준법 (7호)에 의해 추가 개정된 불기 2511년 산업체품 표준법의 제15조에 의거하여 내각이 공고하도록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산업부 공고

5704호 (불기 2563년)

불기 2511년 산업제품표준법의  
내용에 의거하여 발의

M 및 N 탑입 차량 산업제품 표준 규정

: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

불기 2558년 산업제품 표준법 (7호)에 의해 추가 개정된 불기 2511년 산업제품 표준법의 제15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산업부장관은 TIS 3026-2563호 M 및 N 탑입 차량 산업제품 표준: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을 이 공고의 말미에 세부사항을 첨부한 바와 같이 공고한다.

이는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불기 2563년 3월 4일에 공고

쓰리야 쟁릉르양낏

산업부장관

## 산업제품 표준

# M 및 N 타입 차량: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

### 전반적 내용

이 산업제품 표준은 UN Regulation No. 100 Revision 2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vehicles of with regard to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electric power train(UN 규정 제100호 2차 개정판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과 관련된 차량의 승인에 관한 통일된 조항) 및 Amendment 1(수정 1)부터 Amendment 4(수정 4)까지를 수정하여 재판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으며, 주요 수정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범위

1.1 Part 1 최대 속도가 25km/h를 초과하도록 설계된 M 및 N 타입 차량의 전기 동력전달시스템과 관련한 안전성에 필요한 특성. 하나 이상의 트랙션 모터(traction motor)가 장착되어 있고, 전기로 구동되고 전기 그리드와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고전압버스와 직류 전기에 의해 연결된 고전압 시스템 및 부품을 포함.

비고<sup>1</sup> 세부적인 차량의 타입은 TIS 2390호에 따른다.

이 표준의 Part 1은 자동차의 충돌 이후의 안전성에 필요한 특성은 포함하지 않는다.

1.2 Part 2 M 및 N 타입 차량의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Rechargeable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 REESS)과 관련한 안전성에 필요한 특성. 하나 이상의 트랙션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전기로 구동되고 전기 그리드와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

이 표준의 Part 2는 엔진의 시동 및/또는 조명 및/또는 기타 자동차 보조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전원을 제공하는,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REES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부사항은 UN 규정 제100호 제1조에 따른다.

#### 2. 정의

세부사항은 UN 규정 제100호 제2조에 따른다.

#### 3. 승인 신청 제출

UN 규정 제100호 제3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TIS 3026-2563

#### 4. 승인

UN 규정 제100호 제4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5. Part 1 차량의 전기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사항은 UN 규정 제100호 제5조에 따른다.

#### 6. Part 2 REESE의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사항은 UN 규정 제100호 제6조에 따른다.

#### 7. 형식승인의 수정 및 연장

UN 규정 제100호 제7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8. 생산 적합성

UN 규정 제100호 제8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9. 생산 부적합에 대한 처벌

UN 규정 제100호 제9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10. 생산 완전 중단

UN 규정 제100호 제10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11. 승인시험을 수행하는 공인 3자 기관(Technical Service) 및 형식승인 기관의 이름과 주소

UN 규정 제100호 제11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12. 경과규정

UN 규정 제100호 제12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13. 별첨

세부사항은 관련 UN 규정 제100호 별첨(ANNEX)에 따른다.